

 <p>거창군 Geochang County</p> <p>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p>	<h1 style="font-size: 4em; margin: 0;">공 보</h1> <p style="font-size: 1.5em; margin: 0;">제832호 2021. 11. 24.(수)</p>	
---	--	---

선 결	기관 의 장

조 례

제2681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3
제2682호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제2683호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7
제2684호 거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20
제2685호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3
제2686호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	29

고 시

제2021-158호 거창군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거창사과 푸드코트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31
제2021-159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중로3-12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33
제2021-162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35
제2021-153호 도로명주소 고시	36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1년 11월 24일

거창군 조례 제2681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공무원”으로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을 “주민”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 제11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3항 중 “하여서”를 “해서”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해당 겸임근무자의 군수”를 “군수”로 한다.

제18조의2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별표 3”을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8항·제10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제11항·제12항을 제6항·제7항으로 각각 하며 같은 조 제2항(기존 제4항) 중 “1인당”을 “1명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기존 제11항) 중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있고, 세 번만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를 “있고”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하고 별표 3을 별표 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분할 규정으로 인하여 장기재직휴가 기간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재직기간이 초과한 공무원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그 남은 일수를 사용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후단 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p>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p> <p>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p> <p>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② (생략)</p> <p>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p> <p>제9조(겸임근무) ① (생략)</p> <p>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p>	<p>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u>다만</u>,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u>주민의 이익</u>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p><삭 제></p> <p>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u>해서는</u> 안 된다.</p> <p>제9조(겸임근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u>군수</u>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야 한다.</p> <p><u>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u>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소속 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p> <p><u>제17조(휴가의 종류)</u>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p> <p><u>제18조의2(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u>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p> <p><u>제20조(연가일수의 공제)</u> 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빼지 않는다.</p> <p><u>제21조(병가)</u> ① 군수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2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일수는 산입하지 않는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p>	<p><삭 제></p> <p><삭 제></p> <p><u>제18조의2(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u>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p> <p><삭 제></p> <p><삭 제></p>

현행	개정안
<p>수행할 수 없을 때 <u>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u> <u>② 군수는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u> <u>③ 병가일수가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u></p> <p>제23조(특별휴가) ① 군수는 경조사가 있는 공무원에게 신청을 받아 <u>별표 3</u>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항 삭제 2015. 6. 10.) ③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u>1인당</u>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3. (생략)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⑦ (생략) ⑧ 공무원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 청구 시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제23조(특별휴가) ① 군수는 경조사가 있는 공무원에게 신청을 받아 <u>별표 2</u>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p> <p><삭제></p> <p>②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u>1명당</u>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3. (현행과 같음) ③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u>영</u>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p> <p>④·⑤ (현행 제6항·제7항과 같음) <삭제></p>

현행	개정안
<p>⑨ (삭제 2006.8.14)</p> <p>⑩ <u>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u></p> <p>⑪ <u>군수는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고, 세 번만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소급 및 이월 사용은 할 수 없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u></p> <p>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p> <p>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p> <p>3.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p> <p>⑫ (생략)</p>	<p><u><삭 제></u></p> <p>⑥ <u>군수는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고, 소급 및 이월 사용은 할 수 없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u></p> <p>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p> <p>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p> <p>3.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p> <p>⑦ (현행 제12항과 같음)</p>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1-111
----------	----------

제출연월일	2021. 10. 15.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장기재직휴가 사용 방법을 개선하여 장기재직자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함으로써 업무 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있는 내용을 단순히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내용 삭제함

조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근무기강 확립(안 제4조)	근무기강 확립(제1조2)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안 제11조)	면직된 공무원의 근무(제12조)
휴가의 종류(안 제17조)	휴가의 종류(제6조)
연가일수의 공제(안 제20조)	연가일수의 공제(제7조2)
병가(안 제21조)	병가(제7조5)
특별휴가(안 제23조제3항제8항제10항)	특별휴가(제7조7제5항·제11항·제13항)

나. 장기재직휴가 사용방법 개선함(안 제23조제6항)

- 1) 삭제: 세 번만 분할 사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7조의7
- 2)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9. 2.~9. 23.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1년 11월 24일

거창군 조례 제2682호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명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거창군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 제9조, 제10조,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국·내외”를 “국내외”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지도·감도 및 검사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또는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장학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출연금의 반환) ① 군수는 장학회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관련 임원의 교체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② 장학회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의 반환 요구를 받은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p><u>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u></p> <p><u>제3조(정관) 장학회의 정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다.</u></p> <p><u>제7조(사업) ① 장학회는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2.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 3. 교육여건 개선사업 4. <u>국내·외</u> 청소년과의 교류사업 5. 그 밖에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p>② (생략)</p> <p><u>제9조(재정지원)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학회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u></p> <p><u>제10조(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등)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u></p> <p><u>제12조(공무원의 인력지원) 군수는 장</u></p>	<p><u>거창군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u></p> <p><삭 제></p> <p><u>제7조(사업) ① 장학회는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2.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 3. 교육여건 개선사업 4. <u>국내외</u> 청소년과의 교류사업 5. 그 밖에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p>②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학회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장학회에 인력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군수는 장학회의 사업수행에 관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장학회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지도·감도 및 검사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또는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장학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출연금의 반환) ① 군수는 장학회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관련 임원의 교체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② 장학회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의 반환 요구를 받은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1-112
----------	----------

제출연월일	2021. 10. 15.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장학회에 대한 지도·감독 및 출연금 반환 근거를 신설하여 출연금 집행의 투명성 및 장학회 사업수행의 적정성을 높이고 재량권 남용에 따른 위법·부당한 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남도 사회적가치 감사결과 정비과제 신설(안 제13조·제14조)

- 1) 지도·감독 등
- 2) 출연금의 반환

나. 법령·조례를 단순히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 삭제(안 제3조·제9조·제10조·제12조)

- 1) 정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민법」 제43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 2) 재정지원: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3) 공유재산 무상대여 등: 「공유재산법」
- 4) 공무원의 인력지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5, 제27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9. 3.~9. 23.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전부반영함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아동복지심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1년 11월 24일

거창군 조례 제2683호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거창군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에서 대신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0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거창군 아동빈곤예방 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에서 대신한다.</u>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1-113
----------	----------

제출일자	2021. 10. 15.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아동복지위원회와 아동빈곤예방위원회는 모두 아동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로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아동복지위원회가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여 위원회를 탄력적 운영하고 유사·중복 기능의 위원회의 남설로 인한 행정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신설(안 제10조)

1) 내용: 아동복지위원회에서 기능 대신함

2) 근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단서

나. 경상남도 적극행정 실현 소극행정 특정감사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9. 24.~10. 14.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1년 11월 24일

거창군 조례 제2684호

거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의 기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세부기준(제2조 관련)

구분	세부기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1.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2.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 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의 안전 거리는 다음 표에 따른 거리 이상일 것 <table border="1" data-bbox="418 792 1420 1070"> <thead> <tr> <th>저장능력</th> <th>보호시설까지의 거리</th> </tr> </thead> <tbody> <tr> <td>10톤 이하</td> <td>24미터</td> </tr> <tr> <td>10톤 초과 20톤 이하</td> <td>27미터</td> </tr> <tr> <td>20톤 초과 30톤 이하</td> <td>30미터</td> </tr> <tr> <td>30톤 초과 40톤 이하</td> <td>33미터</td> </tr> <tr> <td>40톤 초과 200톤 이하</td> <td>36미터</td> </tr> <tr> <td>200톤 초과</td> <td>39미터</td> </tr> </tbody> </table> 다만,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할 경우 저장능력별 안전거리에 0.7을 곱한 거리로 한다.	저장능력	보호시설까지의 거리	10톤 이하	24미터	10톤 초과 20톤 이하	27미터	20톤 초과 30톤 이하	30미터	30톤 초과 40톤 이하	33미터	40톤 초과 200톤 이하	36미터	200톤 초과	39미터
저장능력	보호시설까지의 거리														
10톤 이하	24미터														
10톤 초과 20톤 이하	27미터														
20톤 초과 30톤 이하	30미터														
30톤 초과 40톤 이하	33미터														
40톤 초과 200톤 이하	36미터														
200톤 초과	39미터														
액화석유가스 판매와 충전 사업자의 영업소	1.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2.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같은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9제곱미터 이상일 것 4. 판매업소에는 용기운반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11.5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것														

거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의안 번호	2021-114
----------	----------

제출연월일	2021. 10. 15.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사용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안 제2조·별표)

-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사업소 부지, 충전장소와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 등
- 2) 액화석유가스 판매 및 충전 사업자의 영업소: 사업소 부지, 용기 보관실 구조·면적 등
- 3) 경상남도 적극행정실현 소극행정 특정감사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6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9. 16.~10. 6.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맞춤형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1년 11월 24일

거창군 조례 제2685호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거창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사업”을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마을만들기”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주민 스스로 능동적으로 수행하여 마을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가. 주민이 제안한 맞춤형 마을만들기

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신활력플러스 및 농촌협약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맞춤형 마을만들기, 신활력플러스 및 농촌협약과 관련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각각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각 위원회

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소관 사업담당에서 구성하고, 심의안건이 있을 때
마다 구성하되 각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1.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위원회
2. 거창군 신활력플러스 추진위원회
3. 거창군 농촌협약 추진위원회

② 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사업계획 수립
2. 사업의 대상과 범위
2. 신규사업 공모 및 사업 추진
4. 그 밖에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제3항·제4항(기존 제5항) 중 “위원회”를 “각 위원회”로 각각 하고, 같은
조 제4항(기존 제5항) 중 “담당과장이”를 “담당주사가”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 제15조, 제17조 중 “위원회”를 “각 위
원회”로 각각 한다.

제14조제3항 중 “위원회의 간사”를 “군수”로 “비치하여야”를 “갖춰둬야”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각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인 사람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2. (생 략)</p> <p>3. “맞춤형 마을만들기”(이하 “마을만들기”라 한다)란 주민에 의하여 그들의 상황에 맞게 자발적으로 제안된 마을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스스로 능동적으로 수행하여 마을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p> <p>4. “추진주체”란 개인, 단체, 단체 간의 네트워크, 마을 또는 공동체 조직으로서 <u>사업을 추진하는 대상을 총칭한다.</u></p> <p>제10조(맞춤형마을만들기위원회 설치) 군수는 마을만들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 맞춤형마을만들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p> <p>2.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에 관한 사항</p> <p>3. 사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p> <p>4. 맞춤형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지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p> <p>5. 그 밖에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u>거창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2. (현행과 같음)</p> <p>3. “마을만들기”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주민 스스로 능동적으로 수행하여 마을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p> <p>가. 주민이 제안한 맞춤형 마을만들기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신활력플러스 및 농촌협약</p> <p>4. “추진주체”란 개인, 단체, 단체 간의 네트워크, 마을 또는 공동체 조직으로서 <u>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대상을 총칭한다.</u></p> <p>제10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맞춤형 마을만들기, 신활력플러스 및 농촌협약과 관련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각 위원회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소관 사업담당에서 구성하고, 심의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각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p> <p>1.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위원회</p> <p>2. 거창군 신활력플러스 추진위원회</p> <p>3. 거창군 농촌협약 추진위원회</p> <p>② 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p>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촉직 위원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마을만들기 관련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주민대표, 전문가 및 마을만들기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만들기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①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은 위원회에 기피신청 할 수 있고,

1. 사업계획 수립

2. 사업의 대상과 범위

3. 신규사업 공모 및 사업 추진

4. 그 밖에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촉직 위원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각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마을만들기 관련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주민대표, 전문가 및 마을만들기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삭제>

④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만들기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① 각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은 각 위원회에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④ (생략)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생략)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3. (생략)

② (생략)

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에 관련되는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각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각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각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뒤야 한다.

제15조(관계부서의 협조) 각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에 관련되는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 운영세칙) 그 밖에 각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1-115
----------	----------

제출연월일	2021. 10. 15.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마을만들기 사업을 주민 스스로 제안한 사업 외에 농림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신활력플러스 또는 농촌협약 사업까지 확대하고 그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조건인 위원회를 추가하는 등 거창군 농촌지역개발사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주민의 풍요로운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을만들기 사업 확대(안 제명, 제2조제3호)

- 1)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거창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 2) 신활력플러스 및 농촌협약 사업 신설

나. 마을만들기 관련 비상설 위원회 추가(안 제10조)

- 1) 현행) 맞춤형 마을만들기 위원회
- 2) 신설) 신활력플러스 추진위원회, 농촌협약 추진위원회

다. 비상설위원회에 따라 위원회 정비(안 제11조·제14조)

- 1) 위원회 임기 삭제
- 2) 정기회·임시회 구분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제116조의2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9. 23.~10. 12.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1년 11월 24일

거창군 조례 제2686호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7의 감면대상란에 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감면대상	감면율
<u>파. 공공목적의 소방용수</u>	<u>100퍼센트</u>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7의 개정 규정은 2021년 7월 상수도 사용료 고지분
부터 적용한다.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1-116
----------	----------

제출일자	2021. 10. 15.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공공목적의 소방용수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를 면제하여 거창군 소방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수도 사용료 면제 대상 추가(안 별표 7)

- 1) 공공목적의 소방용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수도법」 제38조제1항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기간 단축

(가) 예고기간: 2021. 9. 27.~10. 14.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거창사과 푸드코트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거창사과 푸드코트 조성』에 따른 거창군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2021. 11. 18.

거 창 군 수

1. 사업의 개요

종류	명칭	위치	사업규모(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결정면적	금회시행				
				사업부지	건축면적	연면적		
유통업무 설비시설	거창사과 푸드코트 조성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347 번지	94,523.9	37,263	613.90	998.27	거고43호 (‘08.09.25)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거창군수(농업기술센터소장)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3.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 예정일 : 2021. 11월
- 준공 예정일 : 2022. 12. 31.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

5.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m ²)	면적(m ²)	소유자
1	거창읍 대평리	1347	창	37,263	37,263	거창군
합 계				37,263	37,263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중로3-12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거창군 고시 제2008-43(2008.09.25.)호로 최초 결정된 군계획시설(교통시설:중로 3-12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2021. 11. 18.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산33-1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인프라 구축사업
3. 사업의 개요

종류	명 칭	위 치		시 행 규 모						시 행 구 간	최 초 결정일	사업기간
		읍면	리	구분	류별	번호	연장 (m)	폭 (m)	면적 (㎡)			
군 계 획 시 설	거창향노화 힐링랜드 인프라 구축사업	가조	수월	중로	3	12	340	5.4~ 11.7	7,043	가조면 수월리 산33-19번지 ~ 산199-2번지	거창군고시 제2008-43호 (2008.9.25.)	실시계획 인가일 ~ 2022.09.3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거창군수(산림과장)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 예정일 : 2022. 09.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44,308	7,043					
1	가조면 수월리	산33-19	도	2,461	2,136		거창군			
2	가조면 수월리	산33-78	임	17	17		거창군			
3	가조면 수월리	산33-73	임	424	424		거창군			
4	가조면 수월리	산33-77	임	379	379		거창군			
5	가조면 수월리	23-2	도	95	95		거창군			
6	가조면 수월리	산33-72	임	132	132		거창군			
7	가조면 수월리	16-5	임	5	5		거창군			
8	가조면 수월리	16-4	임	3	3		거창군			
9	가조면 수월리	산33-75	임	122	122		거창군			
10	가조면 수월리	산33-15	도	627	627		거창군			
11	가조면 수월리	산33-74	도	12	12		거창군			
12	가조면 수월리	산33-76	임	25	25		거창군			
13	가조면 수월리	산33-79	임	118	118		거창군			
14	가조면 수월리	산33-80	임	46	46		거창군			
15	가조면 수월리	산33-71	임	105	105		거창군			
16	가조면 수월리	산33-14	도	418	373		거창군			
17	가조면 수월리	산33-81	임	52	52		거창군			
18	가조면 수월리	산32-4	도	12	12		거창군			
19	가조면 수월리	산33-50	도	17	17		거창군			
20	가조면 수월리	22-53	도	7	7		거창군			
21	가조면 수월리	산33-53	도	66	66		거창군			
22	가조면 수월리	산33-11	도	816	816		거창군			
23	가조면 수월리	22-15	도	2,583	144		거창군			
24	가조면 수월리	산11-21	임	23	23		거창군			
25	가조면 수월리	산11-11	임	279	172		거창군			
26	가조면 수월리	산11-5	도	558	421		거창군			
27	가조면 수월리	산11-20	임	293	293		거창군			
28	가조면 수월리	10	임	83	41		거창군			
29	가조면 수월리	산11-4	도	386	242		거창군			
30	가조면 수월리	산199-2	천	34,144	118		국(건설부)			

7.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변경)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목적 : 농지조성(과수재배)
2. 사업내역

위 치		사업시행면적(m ²)			사업비	사업 예정기간	사업시행자	
		구분	지 적	개간 승인면적			주 소	성 명
거창군 주상면 연교리	산159	당초	59,937m ²	4,945m ²	5,060천원	2021. 1. 17. ~ 2021. 12. 31.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196	정 태 *
		변경	59,937m ²	4,945m ²	5,060천원	2021. 1. 17. ~ 2022. 12. 31.		

3. 사업효과 : 국토의 효율적 이용 (농지조성)
4. 열람장소 : 거창군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055-940-3542】

2021년 11월 24일

거창군수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1. 24.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밤티재로 1236-27 등 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조서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이동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983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밤터재로 1236-27	20211124	20091228	밤터재라는 지명이 반영된 도로	건물번호 부여	
2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105-2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감월길 872	20211124	20090401	창밖 숲사이로 비치는 달이 유난히 아름다워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3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연교리 산166-2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상임실길 217-54	20211124	20090401	300여년 전에 경주 김씨가 마을을 이루었다하는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4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558-28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중앙농로길 15	20211124	20090401	예로부터 불려져 내려오는 기존 도로명이 반영된 도로	건물번호 부여	
5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둔마리 1004, 1003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가조가야로 414-110	20211124	20090702	거창군 가조면과 합천군 가야면을 잇는 도로	건물번호 부여	
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99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구산1길 339-98	20211124	20090401	마을 곁에 있는 아홉골에 연유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건물번호 부여	

고제 원기(302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거창군에서 고제면 봉계리 일원에 시행예정인 『고제 원기(302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 및 제21조(사업인정에 대한 협의 및 의견청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토지소유자,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거창군수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명 칭 : 거창군수(건설과장)
- 나.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 업 명 : 고제 원기(302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 나. 위 치 :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일원
- 다. 사 업 량 : 도로확포장 L=210m, B=6.5m

3.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가. 토 지 :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산35-2번지 일원
- 나. 물 건 :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 다. 열람내용 : 사업구간 내 편입토지 등 확인 및 누락 여부
- 라. 보상조서 : 붙임문서 참조

4.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이의신청) 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경제산업국 건설과
⇒ ☎055-940-3553

다. 이의제기 :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보상협의 및 지급시기

○ 감정평가 실시 결과 개별통지 예정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인이상(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과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2인)에게 평가를 의뢰한 후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여 거창군과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 후 보상금 지급

【단, 동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 감정평가의뢰 및 실시 → 보상액산정 → 보상협의 요청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 (협의불성립 시) 수용재결 → (협의불성립 시) 공탁

7. 기타사항

가. 보상조서 물건내역은 추후 분할측량 및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변경 또는 제외 될 수 있으며,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의함

나. 본 열람공고와 별도로 기 손실보상 협의 요청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나 송달 불능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본 열람공고로 송달에 갈음합니다.

□ 토지조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편입면	소유자		소유자 이외 권리자			비고
				면적	적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내용	
				(m ²)	(m ²)						
	합계			10949	886						
1	고제면 봉계리	산35-2	임야	484	185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6**	원기**회				
2	고제면 봉계리	657-4	과수원	1,332	129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68**	진*섭				
3	고제면 봉계리	657-5	임야	25	25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65**	진*섭				
4	고제면 봉계리	657-1	전	750	259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로 13*, ***동 ***호	변*효				
5	고제면 봉계리	659-2	답	4,063	14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원기길 6*	최*수				
6	고제면 봉계리	660-9	전	2,377	264	경상남도 김해시 함박로 16*, ***동 ***호 (*동, *****아파트)	최*환				
7	고제면 봉계리	산189-1 8	임	1,918	10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암남로 11*, ***동 ****호 (*동, ****아파트)	밀양변씨** 공파원기문 중				

가조 동례(101호선) 농어촌도로 선형개량공사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거창군에서 가조면 동례리 일원에 시행예정인 『가조 동례(101호선) 농어촌도로 선형개량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 및 제21조(사업인정에 대한 협의 및 의견청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토지소유자,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거창군수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명 칭 : 거창군수(건설과장)
- 나.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 업 명 : 가조 동례(101호선) 농어촌도로 선형개량공사
- 나. 위 치 :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일원
- 다. 사 업 량 : 선형개량 L=147m

3.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가. 토 지 :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602-1번지 일원
- 나. 물 건 :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 다. 열람내용 : 사업구간 내 편입토지 등 확인 및 누락 여부
- 라. 보상조서 : 붙임문서 참조

4.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이의신청) 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경제산업국 건설과
⇒ ☎055-940-3553

다. 이의제기 :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보상협의 및 지급시기

○ 감정평가 실시 결과 개별통지 예정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인이상(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과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2인)에게 평가를 의뢰한 후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여 거창군과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 후 보상금 지급

【단, 동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 감정평가의뢰 및 실시 → 보상액산정 → 보상협의 요청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 (협의불성립 시) 수용재결 → (협의불성립 시) 공탁

7. 기타사항

가. 보상조서 물건내역은 추후 분할측량 및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변경 또는 제외 될 수 있으며,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의함

나. 본 열람공고와 별도로 기 손실보상 협의 요청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나 송달 불능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본 열람공고로 송달에 갈음합니다.

□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편입면 적	소 유 자		소 유 자 이 외 권 리 자			비 고
				(m ²)	(m ²)	주소	성명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합 계			2627	290						
1	가조면 동례리	602-1	답	208	115	가조면 동례길 26*	유*이				
2	가조면 동례리	602-2	답	2,419	175	가조면 동례길 24*-*	민*훈				

가조 대학동(208호선) 농어촌도로 선형개량공사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거창군에서 가조면 도리 일원에 시행예정인 『가조 대학동(208호선) 농어촌도로 선형개량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 및 제21조(사업인정에 대한 협의 및 의견청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토지소유자,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거창군수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명 칭 : 거창군수(건설과장)
- 나.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 업 명 : 가조 대학동(208호선) 농어촌도로 선형개량공사
- 나. 위 치 : 거창군 가조면 도리 일원
- 다. 사 업 량 : 선형개량 L=108m

3.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가. 토 지 : 거창군 가조면 도리 548-7번지 일원
- 나. 물 건 :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 다. 열람내용 : 사업구간 내 편입토지 등 확인 및 누락 여부
- 라. 보상조서 : 붙임문서 참조

4.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이의신청) 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경제산업국 건설과
⇒ ☎055-940-3553

다. 이의제기 :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보상협의 및 지급시기

○ 감정평가 실시 결과 개별통지 예정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인이상(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과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2인)에게 평가를 의뢰한 후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여 거창군과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 후 보상금 지급

【단, 동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 감정평가의뢰 및 실시 → 보상액산정 → 보상협의 요청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 (협의불성립 시) 수용재결 → (협의불성립 시) 공탁

7. 기타사항

가. 보상조서 물건내역은 추후 분할측량 및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변경 또는 제외 될 수 있으며,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의함

나. 본 열람공고와 별도로 기 손실보상 협의 요청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나 송달 불능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본 열람공고로 송달에 갈음합니다.

□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편입면	소유자		소유자 이외 권리자			비고
				면적	적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내용	
				(m ²)	(m ²)						
	합계			1539	96						
1	가조면 도리	548-7	임야	59	2	부산광역시 동래구 미남로132번길 **, ****호	진*성				
2	가조면 도리	548-2	도로	164	7	경북 달성군 수성면 상동	진*무				
3	가조면 도리	548-1	임야	714	23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도리 1194	풍기진씨** 계산공파중 중				
4	가조면 도리	546-7	도로	4	2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가조가야로 14**	박*분				
5	가조면 도리	548-3	임야	515	57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지로 **, **동 **호	박*오				
6	가조면 도리	549	답	83	5	부산광역시 동래구 미남로132번길 **, ****호	진*성				